

#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A7BL)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3-265-776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청주시 거주자	청주시를 제외한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건본주택 오픈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04.(금)	2025.04.11.(금)	2025.04.14.(일) ~ 2025.04.15.(화)	2025.04.16.(수)	2025.04.17.(목)	2025.04.23.(수)	2025.04.26.(토) ~ 2025.05.02.(금)	2025.05.07.(수) ~ 2025.05.10.(토)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제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불필요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2순위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및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제외)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rteracj2.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 / 일반 1·2순위)	○				○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및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04.(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5.04.14.(월) ~ 2025.04.15.(화)	2025.04.16.(수)	2025.04.17.(목)	2025.04.23.(수)	2025.04.26.(토) ~ 2025.05.02.(금)	2025.05.07.(수) ~ 2025.05.10.(토)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이전기관은 현장접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견본주택</b> (10:00 ~ 16:30)</li> <li>-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li> <li>※ <b>사전에예약제 운영 예정</b>(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도 청약은 가능하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을 받게 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해당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는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http://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년(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 - 11714호(2025.04.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30-19번지 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A7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32층 7개동 총 576세대 [특별공급 424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132세대, 생애최초 108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56세대 포함), 일반공급 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타입별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이전 기관	계		
민영 주택	2025000100	01	084.0000A	84AL	84.9565	26.7655	111.7220	57.7396	169.4616	51.7685	292	417	41	41	96	79	12	41	310	107	19
				84ALD	84.9565	26.7655	111.7220	57.7396	169.4616	51.7685	8										
				84AH	84.9902	27.2757	112.2659	57.7625	170.0284	51.7890	117										
		02	084.6592B	84BH	84.6592	27.7069	112.3661	57.5376	169.9037	51.5872	66	66	6	6	15	12	1	6	46	20	3
		03	084.9534C	84CH	84.9534	27.3581	112.3115	57.7374	170.0489	51.7665	93	93	9	9	21	17	3	9	68	25	3
합 계											576	576	56	56	132	108	16	56	424	152	25

※ 상기 주택형 중 전용 84.0000A은 타입별 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평면으로, 청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전용 84.0000A(84AL, 84ALD, 84AH)는 주택형 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0000A			084.6592B	084.9534C
약식표기(타입)	84AL	84ALD	84AH	84BH	84CH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sup>2</sup>)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내부벽체면적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안·허가 과정, 진입로(가감속차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사업부지의 진입로 및 주변 도로에 226m<sup>2</sup>의 감속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감속차로는 준공 시 기부채납 예정으로 상기 대지비분은 상기 기부채납 예정 면적을 제외하고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택형	타입 (약식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2025.06.30	2025.08.05	2025.12.03	2026.04.07	2026.08.05	2026.12.04	2027.06.03		입주예정기간		
084.0000A	84AL	704동 1,2,3,4호 705동 1,2,3,4호 706동 1,2,3,4호 707동 1,2,3,4호	1층	11	90,765,000	301,235,000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78,400,000	
			2층	15	90,765,000	318,235,000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81,800,000
			3층	16	90,765,000	327,235,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83,600,000
			4층	16	90,765,000	336,235,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85,400,000
			5층	16	90,765,000	345,235,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87,200,000
			6~9층	64	90,765,000	349,235,000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88,000,000
			10~15층	96	90,765,000	354,235,000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89,000,000
			16~21층	58	90,765,000	360,235,000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90,200,000
	84ALD	704동 1,2호, 705동 1,2호 706동 1,2호, 707동 1,2호	17~22층	8	90,765,000	392,235,000	483,0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96,600,000	
	84AH	701동 1,3호 702동 1,3호 703동 1,3호	2층	3	90,800,000	318,200,000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81,800,000	
			3층	3	90,800,000	327,200,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83,600,000	
			4층	3	90,800,000	336,200,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85,400,000	
			5층	3	90,800,000	345,200,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87,200,000	
			6~9층	12	90,800,000	349,200,000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88,000,000	
10~15층			18	90,800,000	354,200,000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89,000,000		
16~22층			21	90,800,000	360,200,000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90,200,000		
23층이상			54	90,800,000	362,200,000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084.6592B	84BH	701동 1호 702동 1호 703동 1호	1층	3	90,447,000	303,553,000	394,0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78,800,000	
			2층	3	90,447,000	320,553,000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82,200,000	
			3층	3	90,447,000	329,553,000	420,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84,000,000	
			4층	3	90,447,000	338,553,0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85,800,000	
			5층	3	90,447,000	347,553,00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87,600,000	
			6~9층	12	90,447,000	351,553,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88,400,000	
			10~15층	18	90,447,000	356,553,000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89,400,000	
			16~22층	21	90,447,000	362,553,000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084.9534C	84CH	701동 2호 702동 2호 703동 2호	1층	2	90,761,000	281,239,000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74,400,000	
			2층	3	90,761,000	298,239,000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77,800,000	
			3층	3	90,761,000	307,239,000	398,0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79,600,000	
			4층	3	90,761,000	316,239,000	407,0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81,400,000	
			5층	3	90,761,000	326,239,000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6~9층	12	90,761,000	329,239,000	420,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84,000,000	
			10~15층	18	90,761,000	334,239,000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85,000,000	
			16~22층	21	90,761,000	340,239,000	431,0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86,200,000	
			23층이상	28	90,761,000	342,239,000	433,0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86,6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청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분양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분양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용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수분양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084.0000A	084.6592B	084.953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7	1	2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6	1	1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	1	2	11
	장애인	9	1	2	12
	중소기업 근로자	9	1	2	12
	의사상자	2	1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1	6	9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96	15	21	132
생애최초 특별공급		79	12	17	10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	1	3	16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41	6	9	56
합 계		310	46	68	42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청약신청 시 전용 84.0000A(84AL, 84ALD, 84AH)는 주택형 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b>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p> <p>※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청약통장 불필요</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73 1161 2119 1347">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청주시 및 기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p>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청주시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청주시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충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의사상자(충청북도청 복지정책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p> <p>-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p> <p>■ <b>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p> <p>-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p> <p>-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p> <p>※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p> <p>■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p>																																																																																						
당첨자 선정방법	<p>■ <b>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b></p> <p>■ <b>①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b></p> <p>■ <b>② 배점</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배점항목</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배점</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배점기준</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성년 자녀 수 (1)</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 자녀 수 (2)</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 (3)</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세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b>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부모 가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기간 (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b>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시도 거주기간 (5)</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주자저축가입기간 (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body> </table>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p>※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p>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 수 (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 수 (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b>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b>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 수 (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 수 (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b>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b>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li> <li>■ ① 소득구분</li> </ul>	
	단계	소득구분 <b>내용</b>
	1단계	<b>신생아 우선공급 (25%)</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b>신생아 일반공급 (10%)</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순위</li> </ul>		
순위		<b>내용</b>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li>- (② 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li> <li>- (④ 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li> </ul> </li> </ul>	

-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 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유의사항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li>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li> <li>■ ① 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13 909 2128 137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b>■ 자산기준</b>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건축물</td> <td colspan="2">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 </tr> <tr> <td colspan="2">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td> </tr> <tr> <td>토지</td> <td colspan="2">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td> </tr> </table>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b>■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 <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b>■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b> <b>■ ①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b> <b>■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b>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청약통장 불필요</p> <p>※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p> <p>■ 특별공급 대상 산업단지</p> <p>-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현도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p>
당첨자 선정방법	<p>■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p> <p>■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제2항의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p>
청약신청 방법	<p>■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위 내용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 산업단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p> <p>■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p>
대상자 세부사항	<p>·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p> <p>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li> <li>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 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li> <li>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li> <li>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li> <li>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li> <li>마. 국립·공립 연구기관</li> <li>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li> <li>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li> <li>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li> </ul> </li> <li>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li> <li>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ul> </li> </ol> <p>· 상시근로자의 범위</p> <p>-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p>



대상자  
세부사항

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의 범위**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방과후 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연구기관의 범위**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개정 2021.08.17.>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2020.05.19.>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대통령령」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대상자  
세부사항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 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b>(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합니다.</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73 606 2116 766">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청주시 및 기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li> </ul>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청주시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청주시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li> <li>-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li> <li>-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li> <li>■ ① 지역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전국) 거주자</li> <li>■ ② 가점</li>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table border="1" data-bbox="273 1077 2116 1141">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li>-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table border="1" data-bbox="273 1197 2116 1516">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비고	<b>■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청약신청 일정 및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 및 등·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2025.04.14.(월) ~ 2025.04.15.(화) (인터넷 접수 : 09:00~17:30) (현장접수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스마트폰앱</li> <li>· 건물주택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5.04.23.(수)</li> <li>· 확인방법</li> </ul>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2025.04.16.(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2순위	2025.04.17.(목) 09:00~17:30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정당계약기간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가 상이할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정정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 유선으로 통보함)
-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결번 또는 오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 청약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부</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p> <p>-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p>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p> <p>-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당첨자 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p> <p>- 조회기간 : 2025.04.23.(수) ~ 2025.05.02.(금) (10일간)</p> <p>-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p>-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p> <p>-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문자</p>	<p>- 제공일시 : 2025.04.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p>-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p> <p>*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기간 및 접수 방법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2025.04.26.(토) ~ 2025.04.29.(화) 10:00~16:30까지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
특별공급/일반공급 예비입주자	2025.04.30.(수) ~ 2025.05.02.(금) 10:00~16:30까지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당첨자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해당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안내**(※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기관추천 포함)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대상자 제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인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또는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이전기관 (산업단지) 특별공급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 당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서식1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제출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 당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b>산업단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b>
	○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 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b>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b>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특별공급(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신청 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계속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복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정부24 ※ 세무소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및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과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및 세무서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6, 2018, 2019, 2021, 2024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 - 이택스(etax.go.kr) 서울 외 - 위택스(www.wetax.c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익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관할자치단체 : 전체 / 과세연도 : 2023년 /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만 선택)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5.05.07.(수) ~ 2025.05.10.(토) 10:00~16:30까지 *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아파트 계약금 10%, 발코니 확장 및 유사옵션 계약금 10%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용도 : 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품목 유사옵션 계약금 각각 제출(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신분증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b>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b>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추가 개별통지 서류	해당자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아파트+발코니 확장 계약,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b>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구매한 인지세 종이 문서는 잔금납부 이후 입주 시 계약자에게 지급 예정</b>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외 모두)			인감증명서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b>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b>
			위임장		• 용도 : 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품목 유사옵션 계약 위임용 각각 제출(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b>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b>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은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 수입인지 구매금액 - 아파트+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품목별 공급대금의 1/2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부담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계약자부담 (50%)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구매 절차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 정보 입력(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743952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 7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7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금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대출취급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 지정, 중도금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청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미납부 시 분양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 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분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4.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이종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종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점수분이 유효하며 후점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

- 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를 통해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 2028년 0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 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2개소,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용역원 휴게실, 커뮤니티센터(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2개소

### ■ 주차장

- 지하 1층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 2층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소형택배차,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21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선택 가능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8.05	입주지정기간	
84AL	11,260,000	1,126,000	1,126,000	9,008,000	
84ALD	11,260,000	1,126,000	1,126,000	9,008,000	
84AH	11,220,000	1,122,000	1,122,000	8,976,000	
84BH	12,060,000	1,206,000	1,206,000	9,648,000	
84CH	10,730,000	1,073,000	1,073,000	8,584,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746818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반드시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701동 101호 계약자 → “70101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시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 시 일부 공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은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상·하부층 확장 세대일 경우 발코니를 통한 배수, 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합니다.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세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주택법령,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반드시 행위허가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개별 시공하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비확장 세대의 배수관이 확장 세대의 거실/침실 천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라 배관 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 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과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 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일반형	공기청정형	
84AL, 84ALD 84AH, 84BH, 84CH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삼성전자	3,800,000	4,200,000	
	선택2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100,000	5,700,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500,000	7,300,000	
	선택4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900,000	8,900,000	
84AL, 84ALD 84AH, 84BH	선택5	5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7,900,000	8,900,000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 불가
	선택6	6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9,200,000	10,400,000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 불가
84BH	선택7	6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1(안방) 드레스룸		9,200,000	10,400,000	
	선택8	7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침실1(안방) 드레스룸		10,500,000	11,900,000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 불가

**■ 제습기**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설치 장소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전 타입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AY047BA1SBA	1,200,000	84BH 침실1 드레스룸 에어컨과 중복 선택 불가

- ※ 제습기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배관을 공유하므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 각 1개소만 설치되며, 기타 침실 및 알파룸 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거실 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될 수 있으나, 본 공사 시 적용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025.08.05	입주지정기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904-737455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10%	10%	8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공급대금은 반드시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제습기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지정된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701동 101호 계약자 → “7010101홍길동”)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자보다 선납하더라도 그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

■ 가구 및 마감재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84AL	84ALD	84AH	84BH	84CH	
현관	중문	-	• 3연동 슬라이딩도어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현관창고	-	• 시스템선반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침실	침실1 드레스룸	선택1-1	• 가구도어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선택1-2	• 슬라이딩도어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선택2-1	• 포트형 시스템가구	1,500,000	1,500,000	1,500,000	1,800,000	1,700,000	
	선택2-2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가구	3,700,000	3,700,000	3,700,000	4,800,000	4,100,000	
	불박이장	-	• 침실2 불박이장(측면 거울형)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300,000
-		• 침실3 불박이장(측면 거울형)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구분		선택안	품목	공급금액					
				84AL	84ALD	84AH	84BH	84CH	
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1(공용욕실)	-	• 비데일체형 양변기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욕실2(부부욕실)	-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옵션 선택 시 분리형 비데 미제공)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욕실 Style Up	욕실1(공용욕실)	-	• 벽타일(포셀린타일(600X600)), 수전, 약세사리[세면기수전, 수납형 욕조수전, 휴지걸이, 수건걸이(니켈 고급형)], 욕조에이프런 타일, 환기팬 고급형(환기 + 온풍 + 제습 + 드라이)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욕실2(부부욕실)	-	• 벽타일(포셀린타일(600X600)), 수전, 약세사리[세면기수전, 캔버스 샤워수전, 휴지걸이, 수건걸이(니켈(고급형)], 샤워부스(혹니켈 프레임), 환기팬 고급형(환기 + 온풍 + 제습 + 드라이)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다용도실	수납공간	-	• 다용도실 세탁 선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거실	거실 조명	-	• 직간접라인조명 2줄, 아트월 [단천장 + 간접조명]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2,000,000	
	거실 아트월	-	• 세라믹 타일 * 세라믹 타일 선택 시 트라버틴패턴 또는 베이지패턴 중 선택(무상)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2,300,000	
	거실 Style Up	-	• 거실벽(소파 뒤)+복도벽(침실방향) : 시트판넬, 복도벽(팬트리방향) : 가구판넬, 픽처레일 2면(소파 뒤 및 복도 1면)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2,700,000	
주방	냉장고장	선택1	• [기본형] 냉장고/김치냉장고장 상부 수납장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선택2	• [냉장/냉동고 4도어+김치냉장고 3도어 냉장고형 선택 시] 냉장고/김치냉장고장 상부 수납장 + 수납장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선택3	• [냉장고 1도어+냉동고 1도어+김치냉장고 1도어 냉장고형 선택 시] 냉장고/김치냉장고장 상부 수납장 + 수납장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주방팬트리	-	• 시스템선반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중복선택 불가	700,000	-	700,000	700,000	500,000	
	우물천장	선택1	• 우물천장(신설) + 간접조명	700,000	700,000	700,000	700,000	800,000	
		선택2	• 우물천장(신설) + 간접조명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	800,000	800,000	800,000	800,000	-	
	가구 조명	-	• 상부장 하부 LED 조명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중복선택 불가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 주방 상판 하부 LED 조명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중복선택 불가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주방 상판/벽	선택1	•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상판/벽)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중복선택 불가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700,000	
		선택2	• 세라믹 타일(주방 상판/벽)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중복선택 불가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4,000,000	
	상부장/후드	-	• 상부 플랩장(유리도어) + 독립형 후드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중복선택 불가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주방 Style Up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1	* 11자 주방 및 팬트리2, 홈바 추가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상판/벽) + 상부장 하부 LED 조명 + 주방 상판 하부 LED 조명 + 상부 플랩장(유리도어) + 독립형 후드 + 팬트리1(시스템선반) + 팬트리2[가구도어(가구판넬) + 시스템선반] + 홈바	8,900,000	-	8,900,000	8,900,000	-
선택2			* 11자 주방 및 팬트리, 장식장 추가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상판/벽) + 상부장 하부 LED 조명 + 주방 상판 하부 LED 조명 + 상부 플랩장(유리도어) + 독립형 후드 + 팬트리[가구도어(가구판넬) + 시스템선반] + 장식장	-	8,900,000	-	-	-	
주방 Style Up	주방 상판/벽 (세라믹 타일)	선택1	* 11자 주방 및 팬트리2, 홈바 추가 세라믹 타일(주방 상판/벽) + 상부장 하부 LED 조명 + 주방 상판 하부 LED 조명 + 상부 플랩장(유리도어) + 독립형 후드 + 팬트리1(시스템선반) + 팬트리2[가구도어(가구판넬) + 시스템선반] + 홈바	9,900,000	-	9,900,000	9,900,000	-	
		선택2	* 11자 주방 및 팬트리, 장식장 추가 세라믹 타일(주방 상판/벽) + 상부장 하부 LED 조명 + 주방 상판 하부 LED 조명 + 상부 플랩장(유리도어) + 독립형 후드 + 팬트리[가구도어(가구판넬) + 시스템선반] + 장식장	-	9,900,000	-	-	-	
전 실	바닥 마감	선택1	• 광폭 강마루(전 실)	600,000	600,000	600,000	600,000	700,000	
		선택2	• 포셀린 타일(거실 + 복도 + 주방 + 팬트리) + 광폭 강마루(침실) * 84ALD : 포셀린 타일(거실 + 복도 + 주방 + 계단 하부 창고) + 광폭 강마루(침실)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600,000	
		선택3	• 포셀린 타일(거실 + 복도 + 주방 + 팬트리1, 2) + 광폭 강마루(침실) * 84ALD : 포셀린 타일(거실 + 복도 + 주방 + 계단 하부 창고 + 팬트리) * 주방 Style Up 선택 시 선택 + 광폭 강마루(침실)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 주방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품목	제조사	선택안	구성 내용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전타입	냉장고	LG전자	선택1	냉장/냉동 4도어	BC4S1AA1	4,200,000	
			선택2	김치냉장고 3도어	BC3K1AA1	2,800,000	
			선택3	냉장/냉동 4도어+김치냉장고 3도어	BC4S1AA1+BC3K1AA1	6,700,000	
			선택4	냉장고 1도어	BC1L2AA	1,700,000	
			선택5	냉동고 1도어	BC1F2AA	1,800,000	
			선택6	김치냉장고 1도어	BC1K2AAC	1,900,000	
			선택7	냉장고 1도어+냉동고 1도어+김치냉장고 1도어	BC1L2AA+BC1F2AA+BC1K2AAC	5,300,000	
		삼성전자	선택1	냉장/냉동 4도어	RF60DB9KA1AP	3,200,000	
			선택2	김치냉장고 3도어	RQ33DB74E1AP	2,300,000	
			선택3	냉장/냉동 4도어+김치냉장고 3도어	RF60DB9KA1AP+RQ33DB74E1AP	5,200,000	
			선택4	냉장고 1도어	RR40C78(9)95AP	1,600,000	
			선택5	냉동고 1도어	RZ34C78(9)65AP	1,600,000	
			선택6	김치냉장고 1도어	RQ34C78(9)45AP	1,800,000	
			선택7	냉장고 1도어+냉동고 1도어+김치냉장고 1도어	RR40C78(9)95AP+RZ34C78(9)65AP+RQ34C78(9)45AP	4,900,000	
	인덕션	LG전자	선택1	인덕션 3구(블랙)	BEI3GQBI	1,200,000	
			선택2	하이브리드(블랙_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BEY3GBI	900,000	
		삼성전자	선택1	인덕션 3구(블랙)	NZ63T5701AK	650,000	
			선택2	하이브리드(블랙_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NZ63T5601AK	600,000	
	전기오븐	LG전자	선택1	전기오븐	MZ941CLCAT.CKOR	800,000	
		삼성전자	선택2		NQ50T8539BK	800,000	
	식기세척기	LG전자	선택1	식기세척기	DIB22S	1,200,000	
삼성전자		선택2	DW60T7065SS		900,000		

※ 상기 냉장고 옵션 선택 시 냉장/냉동 4도어+김치냉장고 3도어와 냉장/냉동/김치 1도어 중복선택 및 제조사 교차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냉장고 옵션 선택 시 구성내용에 맞게 냉장고장 옵션을 선택하여야 냉장고장 및 수납장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공간만 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025.08.05	입주지정기간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가구 및 마감재, 주방가전)	우리은행	1005-404-742756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10%	10%	80%	

※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은 반드시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_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701동 101호 계약자 → '70101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3항에 의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자는 희망하는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와 관련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품목 계약이 가능한 기간, 중도금 납입 또는 자재 발주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미확장 시 시공상의 문제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추가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미선택 시 가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간만 제공됩니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판넬이 부착됩니다.(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됨)
- 식기세척기 옵션 미 선택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 패키지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인덕션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욕실 옵션 선택 시 복합환풍기가 설치되며 일반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옵션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수전이 설치되며, 코너선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특성상 코너부에는 코너비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타입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조명기구,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 구성,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부가세포함)은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품목 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썸, 세대현관 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동림, 무선AP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 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타입(약식표기)	84AL	84ALD	84AH	84BH	84CH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35,862,000	35,862,000	36,895,000	36,928,000	36,910,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미선택 중 택일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 계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사업자의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진행 중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된 시설물을 훼손할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시공 시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견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는바,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와 발생한 분쟁 등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분양대금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12 기타 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청주테크노폴리스 A-78L 공동주택  
건축주: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주)에프비이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  
면적: 98,110.6632㎡ (약 29,753.0827㎡)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0832-7  
인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4.9.12. ~ 사용종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9월 12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료에너지건축을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청주테크노폴리스 A-78L 공동주택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  
면적: 98,110.6632㎡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24-주-에-11-0120  
평가자: 박소연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종일 또는 사용감사 종료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값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비율상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에너지효율 79%		48	79%
에너지효율				56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7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6.3	66.5	51.0	13.8
급탕	30.7	35.4	26.3	7.2
조명	8.5	7.3	20.1	3.4
환기	75.5	111.7	7.0	1.2
합계	150.0	220.9	104.4	25.6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설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설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분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질, 가급, 연소,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 ] 설치된 [ V ] 설치되지 않음)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서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 최종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에 용도 별 다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료에너지건축을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청주테크노폴리스 A-78L 공동주택  
2. 신청자: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주)에프비이  
3. 대위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  
4. 성능 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향음속 차단성능	정능등급
2. 중앙음속 차단성능	정능등급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정능등급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정능등급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정능등급

**나. 구동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정능등급
2. 가변성	정능등급
3. 유리용이성 전동부분	정능등급
4. 유리용이성 공용부분	정능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면적외 녹지율 조성	정능등급
21. 자연지반 녹지율	정능등급
22. 세대면적률	정능등급
23. 건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정능등급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정능등급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정능등급
26. 단열재대 환기성능 확보	정능등급
27. 자동차노조합장치 설치 수준	정능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재·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면적	정능등급
2. 대중교통의 근접성	정능등급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정성	정능등급
4. 생활권서비스의 접근성	정능등급
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정능등급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정능등급
7. 시공자 매뉴얼 제공	정능등급
8. 녹색건축인증 정보제공	정능등급
9. 단열재의 사용적 적치배치	정능등급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적치배치	정능등급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정능등급
12. 세대 내 물소 확보율	정능등급
13. 음네트웍 종합시스템	정능등급
14. 발발안전 콘크리트	정능등급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정능등급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시 및 경보설비	정능등급
2. 자연선풍	정능등급
3. 방화성능	정능등급
4. 수몰피난구	정능등급
5. 폭도 및 계단 유호터마	정능등급
6. 피난설비	정능등급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소방	정보통신	전기
회사명	(주)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주)라인이엔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주)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099,457,700	808,513,455	281,000,000	578,057,9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 「주택법」 제57조 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제15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한 항목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31,560,179,015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2,181,681,901	기계설비	위생기구 공사	972,424,981		
	기간이자	2,293,908,367			용접공사	8,222,196		난방설비공사	2,550,473,406		
	필요적 경비	1,664,025,271			조적공사	1,479,995,318		가스설비공사	208,376,665		
	그 밖의 비용	16,745,262,347			미장공사	3,453,323,068		자동제어 설비공사	228,756,851		
계	52,263,375,000	단열공사			3,288,879,143	특수설비공사		1,675,998,112			
공사비	토목	토공사			2,287,276,803	방수·방습공사		2,795,547,371	그 밖의 공종	공조설비공사	569,671,809
		흙막이공사			-	목공사		5,179,984,272		전기설비공사	9,608,394,460
		비탈면보호공사			152,485,272	가구공사		2,384,437,560		정보통신공사	3,846,107,318
		옹벽공사			228,727,908	금속공사		3,453,323,068		소방설비공사	5,912,232,417
		석축공사			228,727,908	지붕 및 흡통공사		246,665,886		승강기공사	1,923,389,518
		우·오수공사			686,182,965	창호공사	5,919,982,590	일반관리비		6,826,063,307	
		공동구공사			152,485,272	유리공사	1,479,995,318	이윤		5,460,850,64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81,212,421	타일공사	2,631,103,447	계		135,377,628,121	
		도로포장공사			1,143,638,022	돌공사	2,466,659,523	설계비		2,550,00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76,242,636	도장공사	2,302,215,598	감리비		4,143,731,960	
	정확조시설공사	304,970,544			도배공사	657,775,697	일반분양시설경비	9,011,000,000			
	조경공사	3,812,127,246			수장공사	4,111,098,764	분담금 및 부담금	4,265,000,000			
	부대시설공사	838,668,237			주방용구공사	1,973,327,750	보상비	-			
	건축	공동가설공사			1,068,885,507	잡공사	328,887,848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5,208,354,407		
		가시시설물공사			3,453,323,068	급수설비공사	1,177,328,831	계	45,178,086,367		
		지정 및 기초공사	1,315,551,393	급탕설비공사	999,730,299	그 밖의 비용	19,899,910,512				
		철골공사	41,110,981	오배수설비	903,107,000	합 계	252,719,00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2,293,908,367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714,877,498	
	제세공과금	1,664,025,271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5,983,516,350
	말뚝박기 공사비	7,685,214,084			정보통신특등급	1,440,995,79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8,474,488,708			에어컨냉매배관	1,510,969,140
	택지와 관련된 경비	585,665,416			기계환기설비	2,532,140,190
	소 계 (택지비 가산항목)	20,703,301,846		공동주택성능등급	2,794,216,05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공사	2,324,434,101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644,316,930	
		법정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239,583,960		
		분양보증수수료	715,613,390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19,900,663,40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및 금액**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6812025-101-0000100 호	₩ 202,175,2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홈오토, 발코니세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피에프비(주)	(주)산하이앤씨	금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하에코종합건설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40번길 7, 4층(지동동, 대니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 (서초동, 세원빌딩)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202동 18층 1812호, 1813호, 1814호, 1815호, 1816호(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법인등록번호	150111-0351720	110111-5680502	110111-0134877	1348111-0705254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li> <li>•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li> <li>•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잔금납부시까지 상호정산 합니다.</li> <li>• 본 사업부지는 당초 30,144㎡에서 확정측량시 30,140.2㎡로 확정측량(3.8㎡ 감소)되었으며, 최종 2025년 3월 10일 보존등기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부지는 향후 사업계획변경 승인 예정이며, 현재 대지지분은 변경 전 대지면적 기준으로 본 계약체결 시 “을”은 이에 대하여 수인하며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사항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내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의 구조변경(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한 입주지연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li> <li>•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li> <li>•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 레벨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통될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인·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1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p>	<p style="text-align: center;"><b>인·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의 디자인 변경과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공부 정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변경) 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 분양 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등),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아파트 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부지 및 시공 현황과 측량 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 사항으로 해당 주관사 또는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 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단지 내·외부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 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청주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시 공공(청주시청 또는 충북도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오수펌프장, 통신탑, CCTV탑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 주택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옹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당 사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냉세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구분	내용
<p>단지 내·외부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li> <li>•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li> <li>•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총복선이 위치하여 열차운행 등으로 소음, 분진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가칭)이 신설 예정으로 향후 철도관련 공사, 열차운행 등으로 소음, 분진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개발계획, 개통 시기 및 역사 위치 등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li> <li>•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당 사업지는 단지 인근의 공항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구역에 해당되나, 주·야간에 군용 비행기(전투기 또는 항공기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변 자연환경(백로서식지, 송절방죽, 신정방죽)에 따른 냄새나 소음으로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문주와 경비실이 계획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주동은 상업시설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공통</p> <p>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남측에는 30m도로, 남동측에는 23m 도로, 남서측에는 12m 도로, 북측에는 20m 도로가 인접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동측에 소하천이 위치하여 자연환경에 따른 냄새나 소음으로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북동측 송화로(23m도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브릿지형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비상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이므로 일반 차량의 진입은 제한되며, 해당 공간에는 별도의 문주 및 경비초소,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브릿지형 도로로 통행시 추락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브릿지형 도로의 마감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니므로 모형을 포함한 홍보물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에는 내곡3초등학교(가칭) 예정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가 위치하며, 서측에는 종교시설, 단독주택, 준주거 부지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생활의 불편함(불법주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 부지 학교의 설립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설립시기를 포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육지원청 및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가감속차로 기부채납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소하천 부지와 최대 약 4m 단차가 발생하며, 해당 구간은 옹벽으로 마감됩니다. 옹벽주변부의 마감, 옹벽의 높이, 형태, 마감, 종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본 아파트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등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li> <li>•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도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장의 모집공고, 계약서, 모형, CG, 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여객기, 군용기 등) 이·착륙 시 및 비행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항공기 관련 소음 등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 제7권역* 공립유치원 분산 배치 (*제7권역 : 봉덕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솔밭초병설유, 운천초병설유, 증안초병설유, 직지초병설유, 진흥초병설유, 청주내곡초병설유, 흥덕초병설유)</li> <li>- 초등학교 : 가칭) 내곡3초 배치 가능(2027년 개교 예정)</li> <li>- 중학교 : 청주시 제2학교군 분산 배치</li> <li>- 고등학생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li> </ul> </li> </ul>

구분		내용
공동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li> <li>•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청주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ul>
단지	동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세대는 동 별 배치에 따라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층수 및 배치 등의 사유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li> <li>• 현관 등의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704동, 706동 측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계단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주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1층에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용 D.A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에는 빗공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702동, 703동 인근 지하층 진입을 위한 썬큰 및 승강기,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의 옥상에는 녹지화를 위하여 저관리형의 세덤식재가 계획되어 되어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의 옥상의 세덤식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704동, 705동, 706동은 지상1층에 제연급기용 D.A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707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어 조망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출입구 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램프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 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인접한 실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702동 옥탑에 소화용 수조가 설치되며 일부 주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2동 공용부를 통해 관리자의 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기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는 실외기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주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문주 및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아파트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li> <li>• 아파트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동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아파트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생활폐기물보관소(재활용보관시설 등), 수목,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1층 출입구 부분에 생활폐기물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 통행 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스프링클러 배관 및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인·허가 기준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놀이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은 분양 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li> <li>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관련 시설물(수목·시설물·조경시설·포장·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조경시설/포장의 색채, 재질 및 위치, 식재의 수종 및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녹지 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지상1층 및 지하1~2층 진입홀 및 지상층승강기 홀 크기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p>	<p>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차량 동선 및 정차구간, 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 702동, 703동, 705동, 706동. 지상1층 D.A 인근</li> <li>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 - 702동, 703동, 705동, 706동. 지하1층 - 705동 인근, 706동 인근</li> </ul> </li> </ul> </li> <li>•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li> <li>•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주차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발생하는 다툼 등의 문제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사업 층간 소음제는 바닥충격음 경량2등급과 중량4등급 인정자재(자재시험성적서 기준)로 시공 예정이며, 실제 공사 후 시험시 주변 환경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마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계부 펜스 및 옹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의 분양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설치되는 벽부형 사인물, 동표시 등의 개수, 위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동표시 사인물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은 빔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과 모형 등에 표현된 줄눈, 문양 등 세부 디테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 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및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 아파트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상의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건축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근접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공사여건에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운동기구, 골프타석, 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생활폐기물보관소, 재활용 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li> </ul>

구분	내용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공용설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설비 및 기계장치의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등 동파우려 배관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특정 제품(브랜드)의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873대, 근린생활시설 6대, 총 879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45개(급속 6개, 완속 39개(콘센트 포함))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 진입길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열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내부 색채디자인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 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차로 유효높이는 2.7m(주차면과 지하 동출입구 등은 더 낮아질 수도 있음)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 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차로 유효높이는 2.3m로 소형택배차,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합니다.</li> <li>·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출입구와 통로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단실 등의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벽체 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화재 시 3대 간격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눈, 비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 구매는 고려하지 않고 시공됩니다.</li> <li>· 배치계획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대수에 포함되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시 해당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p>단지</p> <p>근린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단지 부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각 호별 출입구가 707동 북측(배면부)로 있으며, 그에 따른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으며, 이로인해 707동 일부세대는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단위 세대</p> <p>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창문 열림 방향 등)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높이는 2,300mm로 시공되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천장고가 상이합니다. (지상1층, 지상2층 세대는 2,500mm)</li> <li>•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다용도실,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li> <li>•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최상층 다락타입의 다락은 실제 시공 시 형태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옥외공간 타입 하부 세대의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옥외공간 타입 하부 세대에서는 상부 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옥외공간 타입 상부 세대는 우천 시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튕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 줄눈으로 시공됩니다.</li> <li>•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사용되는 강마루 및 광폭강마루(유상옵션)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및 기구류의 위치와 사이즈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 조정할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세대</p>	<p style="text-align: center;">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와 창호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부 실 시공 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 허용 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열재와 단열창호의 종류 및 성능은 법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내 또는 공용부의 비내력 벽체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실별로 조적 또는 경량벽체,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코어에 엘리베이터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대 현관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내부벽체는 일부 건식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됨으로 중량물의 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중량물 벽면 부착시 보강조치 필요하고 경량물 부착시 석고보드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발코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상층 단열 및 배수조건으로 발코니 천장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바닥 배수구, 우수 및 배수 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공간의 한계로 빨래건조대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평면 선택 시 빨래건조대 공간은 없음)</li> <li>• 다용도실은 보일러, 바닥 배수구, 도시가스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발코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용도실 문턱의 높이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단열재 시공여부에 따라 실외기실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는 우/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기와 각종 배관, 덕트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실과 인접한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실외기실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없으며, 항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누수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었던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세대</p> <p style="text-align: center;">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부 창호 프레임 포장재는 PVC 재질이며 해당 재질의 색상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 설치 관련 본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그릴 창호의 색상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새시 (발코니 등)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에 설치되는 도어는 갑종방화문(FSD)로, 세대 형태에 따라 거실 또는 드레스룸, 다용도실에 면하여 설치되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다락 (84A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 다락 공간이 설치되는 세대의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옥상)으로 개별 점용이 불가하며, 주동의 형태에 따라 상부 옥탑 구조물, 태양광 설비, 환기시설 등이 노출 시공되며 설치 규모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최상층 다락 외부 공용공간(옥상)에는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민원 및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최상층 다락공간은 난방이 되지 않으며, 단열 및 내부 마감재 여부에 따라 내부 천장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최상층 다락 외부는 공용공간으로서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법의 이유로 공공의 관리 목적이 아닌 사적사유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주택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공공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통보 시 이를 거부한다거나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li> <li>• 다락방 외부공간에서의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유아, 노약자 등 주위가 필요한 입주자의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li> <li>• 다락방 외부공간에서의 외부활동으로 인해 인접된 입주자간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최상층 다락세대는 다락에서 외부공간 진출입시 창호의 하부턱 및 상부 인방에 부딪히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최상층 다락세대 외부공간은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최상층 다락세대 외부공간 난간/간벽 설치부위는 동·호수에 따라 상이합니다.</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다락</b> (84A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 다락세대 외부공간 진출입 시 실내 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최상층 다락세대의 다락공간 층고는 가중평균하여 1.8m 이하이며, 다락 내부 최대 층고는 2.5m이나 박공지붕에 의해 실내 천장고가 달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다락 가장자리 일부는 층고 확보를 위하여 높이 최고 60cm, 최저 10cm 미만으로 계획되었으며, 이 구간은 실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시공상 여건에 따라 다락층의 바닥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옥상부 점검 등으로 인해 다락 내부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최상층 다락 세대의 경우, 기준층 세대와 상이하게 공급되는 세대로 공급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가구</b> 및 <b>마감재</b></p> <p style="text-align: center;"><b>단위</b> <b>세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출입문,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플라스틱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li> <li>• 인접 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냉장고장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가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공간만 제공됩니다.)</li> <li>•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방화문 도어 손잡이는 본 시공 시 시건장치가 없는 손잡이로 설치되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li> <li>•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발코니 확장 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공간옵션(주방 Style Up) 등에 따라 타일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전기기계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환기 디퓨저,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 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 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li> <li>•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 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단위 세대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드레스룸, 알파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 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주택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li> <li>• 각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제171조에 의거하여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li> <li>• 1층 부대복리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층의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 시 견본주택 설치된 실외기 그릴창 및 벽체는 일부 형태, 위치, 크기, 높이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대 안전성 검토에 따라 높이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저 및 세대 내 스피커는 본 공사 시 사업계획승인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오니 별도 확인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84ALD, 84AH, 84BH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L, 84CH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되나, 타입별 마감자재 정보는 별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사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ul>

■ **건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건본주택 약도	분양 안내
 <p data-bbox="168 574 571 606">  <b>건본주택</b>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본주택</b>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li> <li>■ <b>사 업 지</b>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30-19번지 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A7BL)</li> <li>■ <b>홈페이지</b> : <a href="http://www.arteracj2.co.kr">www.arteracj2.co.kr</a></li> <li>■ <b>분양문의</b> : 043-265-7767</li> </ul> <p>※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p> <p>※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p> <p>※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p>